



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구현

의안번호

제74호

논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원 의원 외 5명
제출연월일	2023. 5. 16.

논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호	제74호
--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5. 16.

대표발의자 : 서 원

공동발의자 : 김남충, 조배식,
조용훈, 서승필,
허명숙

1. 제안이유

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개정(2020.12.8.)됨에 따라 「논산시 포상 조례」에 의거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의용소방대 포상에 관한 지원근거 마련 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
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2

나. 입법예고 : 2023. 5. 16. ~ 5. 20.(5일간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의회 조례 제 호

논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제8조로 하고,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제7조(포상) 시장은 화재진압, 구조·구급·구호 및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히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「논산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 관 부 서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서 원 의원 외 5명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16조2(성과중심의 포상 등)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·관리하고,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·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